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18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4. 27.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4. B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전 788㎡, D 전 787㎡(이하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4. 25. 서남부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2008. 5.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남부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8. 1. 서남부영농조합법인에 서남부영농조합법인의 출자약정 위반을 이유로 출자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서남부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출자약정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2014. 1. 1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남부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가단47511), 서남부영농조합법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는 기각되었으며(대전지방법원 2014나1773)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5. 3.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8. 1. 출자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9,812,250원, 농어촌특별세 560,700원, 지방교육세 841,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출자약정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에 불과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라항 기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서남부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였다가 서남부영농조합법인의 정관 위반으로 출자약정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참조), 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이하에서는 원고가 출자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남부영농조합법인은 구 농업·농촌기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업·농촌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서남부영농조합법인의 정관 제15조 제5항은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남부영농조합법인은 2012. 4. 30.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남대전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가 서남부영농조합법인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항의하자, 서남부영농조합법인은 2013. 7.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서남부영농조합법인의 정관 제26조 제1항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 8. 1. 서남부영농조합법인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자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서남부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8항에 따라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조합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서남부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원고가 서남부영농조합법인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의 지분을 계산하여 반환한 것이지, 원고가 서남부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자하기로 한 약정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민경

판사 윤민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구 농업.농촌기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끝.